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3. 29.(일) / 총 2매
담당 부서	신교통서비스과	담당자	·과장 박준상, 사무관 최규용 ·☎ (044) 201-3817, 3820
	첨단자동차기술과	담당자	·과장 이창기, 사무관 정재원 ·☎ (044) 201-3847, 3848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**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
「자율주행차법」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
「여객자동차법」은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.**

< 보도내용 (중앙SUNDAY, 3.28) >

◆ 불법인 타다, 자율주행차 대여해 영업하면 ‘합법’이네

□ 「자율주행차법」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자율주행차의 연구·시범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, 이는 자율주행차의 대여·운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.

○ 「자율주행차법」에 따른 여객 유상운송 실증은 자율주행차법에 따라 지정된 ‘시범운영지구*’ 내에서만 허용** 됩니다.

* 법 제7조(시범운영지구의 지정 등) ** 법 제9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)

※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제어권 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므로 운전자 탑승이 전제됨

○ 한편, 이번에 개정된 「여객자동차법」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일반법으로, 기사알선과 관련하여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.

○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「자율주행차법」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「여객자동차법」은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.
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신교통서비스과 최규용 사무관(☎044-201-3820),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재원
사무관(☎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